

## 『하나 기업어음』 특약

### 제1조 통장에 의한 거래

은행과의 어음매출 거래는 통장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매입하신 어음실물은 은행이 보관하기로 합니다.

### 제2조 입금계좌 지정

은행에 어음 실물을 맡기신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신규시 지정하신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하여 드리고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 추심료 부담

은행에 보관 의뢰한 매입어음을 추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은행이 추심료를 부담하겠습니다.

### 제4조 어음실물의 교부

매입인께서 매입하신 어음실물을 직접 가져가고자 하실 경우에는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하신 경우에 한해 은행은 어음실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5조 어음실물교부에 따른 면책

- ① 매입인께서 매입하신 어음실물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보관하시는 중 매입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매입인께서 직접 보관하시고 있는 매입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하신 경우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당초의 매출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제6조 어음의 부도

매입하신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제7조 사고 등의 신고

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도난·멸실 등으로 잃으신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